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. 10. 5 선고 2016가단605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피고C

변론 종결2016. 9. 21.

판결 선고2016. 10. 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남 서천군 D 대 691m², E 전 1967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70㎡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, 별지 도면 표시 5 내지 10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46㎡ 지상 목조 스테트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, 별지 도면 표시 11 내지 16,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다) 부분 27m²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및 창고를 각 철거하고,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박설아

별지